

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
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4. 7. 5

시민보건위원회

1. 신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5. 21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1994. 5. 28
- 다. 상정일자 : 제23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' 94. 7. 5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수용 청소과장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(1992. 8. 3 조례 제199호)제8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와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서울특별시장 협의조항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구 자치입법권을 제고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"제28조제2항" 내용이 "제28조제3항"으로 변경되어 인용부분 개정(안 제3조 제1항)
- 구청장의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사항처리시 "시장의 협의"규정 삭제(안 제8조제3항)
- 구청장의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"시장의 협의"규정 삭제(안 제16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김 전재 전문위원)

-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제1항중 "법 제28조제2항"을 "법 제28조제3항으로 하고, 제8조제3항과 제16조제1항중 "시장의 협의를 거쳐"를 삭제하려는 것임.
- 이는 1993. 12. 27 법률 제4656호로 개정 공포된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조례안의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, 시장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구 행정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기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(홍길표 위원) :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?
- 답변(정수용 청소과장) : 없다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
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 안	305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4. 6. 28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

에관한조례(1992. 8. 3 조례 제199호) 제8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의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서울특별시장 협의조항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구 자치입법권을 재고시키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"제28조제2항" 내용이 "제28조제3항"으로 변경되어 인용부분 개정(안 제3조 제1항)
- 구청장의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사항처리시 "시장의 협의"규정삭제(안 제8조제3항)
- 구청장의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"시장의 협의"규정 삭제(안 제16조제1항)

3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4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4. 3. 16 법률 제4741호)제15조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(1993. 12. 27 법률 제4656호)제19조, 제28조제3항 및 제35조

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중 "법 제28조제2항"을 "법 제28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중 "시장의 협의를 거쳐"를 삭제한다.
제16조제1항중 "시장의 협의를 거쳐"를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3조(정화조등의 내부청소) ①구청장은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,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(이하 "정화시설"이라 한다)의 내부청소가	제3조(정화조등의 내부청소) ①구청장은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, 법 제28조제3항 및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(이하 "정화시설"이라 한다)의 내부청소가

현 행	개 정 (안)
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(생략) 제8조(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) ①(생략) ②(생략)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<u>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	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(현행과 같음) 제8조(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<u>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
제16조(분뇨관련 영업의 허가)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,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·장비·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<u>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리를 하여야 한다.</u> ②(생략) ③(생략)	제16조(분뇨관련 영업의 허가)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,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·장비·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<u>허가 또는 변경허리를 하여야 한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

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4. 7. 5.
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6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6. 30.

다. 상정일자 : 제23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('94. 7. 5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수용 청소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하는 제도를 추가 신설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처 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·보완하고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따른 각종 서식을 신설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)
-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.